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문

화관광부는 올해 8월 공청회 개최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터라 4년여 만에 비로소 추진되는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세계 각국 역시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앞다퉈 손질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 채택되었던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송권"의 도입 역시 WIPO 조약의 수용 결과라 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을 유념하여 시도된 최초의 저작권법 개정안이므로 디지털 관련 사업자들은 주의깊게 그 내용을 파악,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주목할 만한 중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디지털 복제를 복제 개념에 명시 (안 제2조 14)

디지털 복제, 즉 각종 디스크에의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 규정이 없었다. 물론 디지털 복제 역시 복제로 봄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복제를 복제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복제 : ~ 그밖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였다.

●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 (안 제2조 8의 2)

개정안은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인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전송권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지껏 온라인 등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하여 복제권 등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규제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파일 전송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전송권 행사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전송권 인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MP3 등 현안 문제의 심

각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허용범위 축소 (안 제27조)

기존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사적 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디지털 녹음·복화기 또는 매체를 국내에 수입 및 배포하거나 국내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자에게 기기 또는 매체의 최초 배포가액의 2/10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사적복제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제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 복제에 대한 침해 책임을 기기 제작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그리고 아날로그 기기는 제외하고 디지털 기기에만 보상금을 부과하는 차별성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그 대립이 첨예한 실정이다.

● 도서관 관내에서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 전송 허용 (안 제28조)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 방송의 정의 규정 수정 (안 제2조)
- 응용미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안 제93조)
-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안 제2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안 제98조)
- 손해배상 범위를 선택적 규정으로 명시 등 (안 제93조)

문의: sycho@dpc.co.kr